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1147 호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0. 16.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0. 22.

2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¹⁾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이하 “제로페이”라 함)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10%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부칙 제2조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<u>2019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<u>2020년 12월 31일</u> .

-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(중소벤처기업부), 지자체, 은행, 민간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하며,
-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수수료²⁾가 연매출액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0%이고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용카드 보다

1)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 사업자를 말하며, 도소매,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함.

2)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%대

소상공인 가맹점	일반 가맹점
연 매출액 8억원 이하 : 0% 8억 ~ 12억원 : 0.3% 12억원 초과 : 0.5%	대기업 계열사 가맹점 1.39%, 중소형 가맹점 최고 2.5%

낮아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,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% 소득공제(이에 비해 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 30%)³⁾ 혜택을 받게 됨.

-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가맹점이 확대(2018.12월 14,677개소 → 2019.8월 161,605개소)되고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
- 당초 서울시 4개년 계획(2019~2022)에서 2019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은 8조 5,300억원인데 반해 2019년 8월 30일 기준으로 결제금액은 23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0.28%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.

[표 2]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따른 제로페이 연차별 목표 (단위 : 억 원)

연도	2019	2020	2021	2022
제로페이 이용금액	85,300	170,601	284,336	426,504

-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·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감면 및 할인 제도 추진(법무담당관-1493, 2019.1.25.)을 위하여 조례([표 3] 참조)를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2019.12.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10%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음.

[표 3]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현황

연번	구분	개정대상 조례	감면대상 *	소관부서
1	조례	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	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	도시교통실 (주차계획과)
2	조례	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경기장 입장료,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,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	관광체육국 (체육정책과)

3) 공제금액 : (사용액-세전연봉의 25%)×공제율×과표소득 최종세율

연번	구분	개정대상 조례	감면대상 *	소관부서
3	조례	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,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, 외국어 등 강습료	평생교육국 (청소년정책과)
4	조례	도시공원 조례	서울대공원 입장료	푸른도시국 (공원녹지정책과)
5	조례	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	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및 서울영어마을 수유·관악캠프 이용료(숙박, 비숙박)	평생교육국 (평생교육과)
6	조례	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	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당, 교실 등 사용료	복지정책실 (인생이모작지원과)
7	조례	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보육실 등 이용료	여성가족정책실 (여성정책담당관)
8	조례	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	서울상상나라 입장료	여성가족정책실 (보육담당관)
9	조례	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	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	물순환안전국 (물재생시설과)
10	조례	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	인재개발원 내 강의·체육시설 사용료	행정국 (인력개발과)
11	조례	장사 등에 관한 조례	시립장사시설 사용료	복지정책실 (어르신복지과)
12	조례	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	한강공원 내 유람선, 체육·휴양시설 등 이용료	한강사업본부
13	조례	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	회의실, 강당 등 사용료	행정국 (자치행정과)
14	조례	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	시립과학관 관람료	경제정책실 (경제정책과)
15	조례	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	교통문화교육원 교양·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건강·생활편의 시설 이용료	도시교통실 (택시물류과)
16	조례	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	시민청 내 유료 전시·공연 이용료 등	시민소통기획관 (시민소통담당관)
17	조례	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	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제작 비용	복지정책실 (장애인복지정책과)

○ 조례가 개정·시행된 2019.5.2.일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116개 시설에 총 114,151건, 약 41억원이 제로페이로 결제되었고, 할 인액은 약 5억원 규모인데, 월별 이용금액을 살펴보면, 5월에 9억 27백만원, 6월에 8억 32백만원, 7월에 10억 36백만원, 8월에 13억 46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⁴⁾를 보이고 있음.

4) 자료 : 서울특별시의회, 2019,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·평가보고서

[표 4]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(2019.5. ~ 8월 기준)

(단위 : 건, 천원)

연번	조례명	시설수	제로페이 결제			제로페이 할인	
			건수	금액	비율	건수	금액
총계		116	114,156	4,140,851	14.6	110,366	500,719
1	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27	32,554	3,592,336	23.0	29,281	382,035
2	도시공원 조례	2	61,747	195,186	8.1	61,747	83,651
3	장사등에 관한 조례	3	330	123,118	3.6	370	6,822
4	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	3	288	49,293	14.1	284	2,490
5	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	14	733	26,146	1.6	709	1,554
6	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	1	402	17,741	5.7	401	1,846
7	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	1	930	9,272	1.6	848	2,509
8	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 관한기본조례	8	914	6,973	1.0	914	740
9	물재생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조례	3	1,388	6,322	12.6	1,387	638
10	시립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	1	5,616	6,101	14.0	5,616	2,614
11	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 징수조례	4	237	5,090	6.0	119	67
12	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	6	482	3,394	0.5	471	347
13	여성관련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	1	77	2,530	7.3	6	2
14	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	1	18	1,625	5.1	18	644
15	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 활용촉진에 관한조례	4	14	178	18.4	14	18
16	공공시설의유희공간개발및사용에 관한조례	4	-	-	-	-	-
17	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	8	-	-	-	-	-
18	장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	4	-	-	-	-	-
19	자유시민대학운영에 관한 규칙	1	15	381	19.3	14	42
20	보라매병원주차장관리지침	1	10	20	0.0	8	1
21	조례 개정 없이 할인시행	19	8,401	95,145	4.3	8,159	14,699

- 이에 서울시는 물재생시설 내 유료 체육시설(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(테니스장, 탁구장, 파크골프장))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현행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10%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제로페이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(<표 5> 참조), 전체 이용건수(7,487건) 대비 제로페이 이용률은 22%(1,649건)이고, 감면에 따른 이용료 손실액은 약 687만 4천원 규모로 서울시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[표 5]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이용현황(2019.5월 ~ 9월)

(단위 : 건수)

구분	전체 이용	제로페이 미이용	제로페이 이용
체육시설	7,487	5,838	1,649(22%)

※ 감면손실액 산출 = (사업수입×40%(제로페이 목표 이용자))×10%(이용료 감면)
 = (171,850천원×40%)×10% = 6,874천원

- 한편, 서울시는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45.3%(할인혜택 만족도 : 매우만족(13.5%), 만족(31.8%), 보통(38%.0), 불만족(13.5%), 매우 불만족(3.1%))로 높은 편이고,
-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이 9월 따릉이 등 61개소, 10월 공공예약서비스 이용시설 81개소, 12월 8개소 등 순차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혜택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- 당초,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중 안전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10% 감면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약 6개월 정도의 시행기간만으로 충분한 제로페이 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가 있음.
- 또한, 신용카드 15%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제가 9회에 걸쳐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우 다년도에 걸쳐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며, 따라서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중단 시 제로페이 이용시민의 불만제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개정안과 같이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연장할 필요성은 있다 사료됨.
- 다만,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혜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이용 저변화라는 점에서 가입자 입장에서의 결제 편의성 개선, 자발적 가입 유도, 실질적 혜택 극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.
- 또한,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혜택이 예산의 간접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음 일몰 시점에서 연장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야할 것임.